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

공보담당관 형사1부장 장인호

전화 033-769-4301 / 팩스 0502-193-4522

## 보도자료

2024. 8. 8.(수)

### 제목 근로자 임금 약 4억 원을 도박에 탕진한 악성 사업주 구속 기소

#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- 관련사건을 공소제기 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사건(제10조 제1항 제3호)
  - 피의자, 처분일시, 죄명, 처분주문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0조 제2항)

●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형사2부(부장검사 류주태)는 근로자 319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약 4억 원을 횡령하여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를 오늘(8. 8.) 구속 기소하였습니다.

● 검찰은 인력파견업체 대표인 피고인이 근로자들 임금 약 6천만 원을 체불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건을 각 불구속 송치받아 직접 보완수사한 결과,

-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319명의 임금 약 4억 원을 인터넷 도박으로 모두 탕진하여 횡령하고, 임금체불로 진정을 당하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근로자들을 회유하여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고 처벌을 회피하여 온 범행의 전모를 밝혀 피고인을 구속하였습니다.

※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● 피고인은 구속수사 과정에서 대지급금 중 일부를 즉시 상환하였고, 검찰은 피고인으로부터 징구한 대지급금 분납신청서, 재산조회 내역을 근로복지공단에 전달해 추후 대지급금 전액이 상환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.

● 앞으로도 검찰은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여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# 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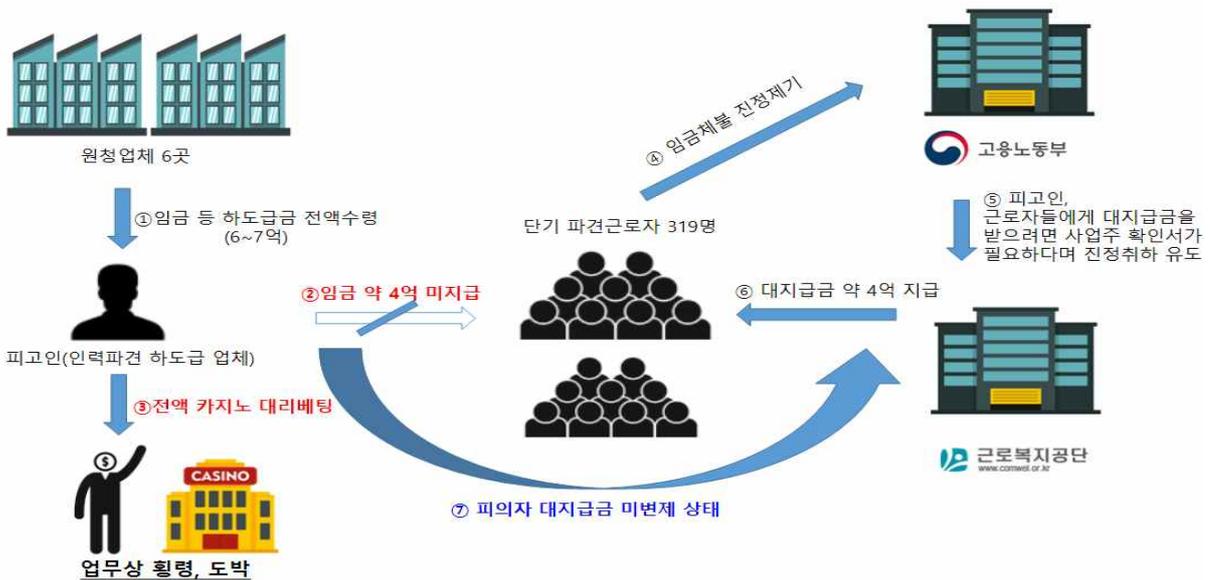
## 사건 개요

### ○ 피고인 및 공소사실의 요지

피고인	공소사실의 요지
<b>A</b> (남, 43세 노무관리업)	▶ '23. 11. 인력파견업체의 실질적 대표자로 근무하며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319명에 대한 임금을 포함한 회사자금 합계 약 4억 5,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 <b>[업무상횡령]</b>
	▶ '23. 11. 약 60회에 걸쳐 인터넷 카지노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횡령 금원을 바카라 게임에 사용 <b>[도박]</b> ※ 검찰 직접 인지
	▶ '23. 11. 근로자 54명에 대하여 임금 약 6,000만 원*을 미지급 <b>[근로기준법위반]</b>  * 퇴직근로자 319명에 대한 임금 합계 4억 원 상당을 체불했으나 국가에서 대부분을 대지급하여 265명은 노동청에 진정취하(내사종결)

### ○ 범행 구조

#### < A가 임금을 횡령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과정 >



※ A가 원청에서 근로자 파견 대가(임금)을 지급 받아(①), 그 전액을 도박에 사용하고 (②,③), 피해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하자(④) 국가의 대지급금으로 변제하고 진정 취하하도록 유도한 뒤(⑤,⑥) 국가에 대지급금은 미상환(⑦)

## II

### 수사 경과

- '24. 3.~6. 노동청·경찰, 근로기준법위반·업무상횡령 각 송치
- '24. 6.~7. 검찰, 계좌분석 및 도박죄 인지
- '24. 7. 25. 검찰, A 구속
- '24. 7. 25. 검찰, A 재산조회·대지급금 분납확인서 청구
- '24. 8. 8. 검찰, A 구속 기소

## III

### 수사 의의

#### ① 검찰 직접 보완수사로 고의적·악의적 임금체불 범행 전모 규명

- 검찰은 '22. 10.경부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하여 ▲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및 대지급금 편취 사업주 등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 ▲ 임금체불 사건 구공판 확대 ▲ 임금체불 전문 형사조정팀 운영 등 엄정하게 대응해 왔음
- 본 사건은 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, 경찰에서 업무상횡령으로 각기 송치된 후 근로자들이 추가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횡령한 임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에 의구심을 품고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한 사안임
- 검찰은 송치사건뿐 아니라 여러 노동청에 산재되어 있던 관련 사건 기록 및 수 천 페이지에 이르는 계좌거래내역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임금체불 피해규모 및 횡령한 임금의 사용처를 추적하였음
- 이를 통해 A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약 4억 원 및 기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그 전액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명확히 밝혀, 악의적 임금체불 범행의 전모를 밝히고 A를 직접 구속하여 엄단함

## ②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 대응

- A는 근로자 265명을 상대로 대지급금 신청을 통하여 체불 임금을 변제 받고 진정은 취하하도록 유도하여 임금체불 범행이 내사종결되도록 하고,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일체 상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였음
  - ※ 대지급금 제도는, 체불사실과 관련하여 진정사건이 제기되어 종결되고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등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,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‘체불임금등·사업주확인서’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임금 지급을 신청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임
- 구속수사 과정에서 A는 대지급금 중 일부를 즉시 상환하였고, 검찰은 A로부터 징구한 대지급금 분납신청서, A의 재산조회 내역을 근로복지공단에 전달해 추후 대지급금 전액이 상환되도록 조치하였음

## IV 향후 계획

- 앞으로도 검찰은 악의적·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에 대하여 금액 다과를 불문하고 엄단함으로써, 임금체불 범행의 재발을 막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☑